

1. 안 건 명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 기획재정국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1월 18일

4.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제127조
2. 지방재정법(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제36조

2011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1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781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657억9,400만원보다 123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비교하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67억3,962만1천원이 증액된 731억9,93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2억3,171만7천원이 증액된 638억8,083만8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370억8,021만5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액대비 약 49.3%에 해당되며 세제개편에 따라 감소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1억5,092만7천원이 증가된 43억6,192만7천원이 내시되었고,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105억6,369만9천원이 감소된 545억8,075만원, 세목교환과 자동차분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보전금인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56억9,780만5천원이 증가된 73억2,508만3천원,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0억4,963만6천원이 증가된 747억5,202만5천원이 편성됨으로써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총 1,410억1,978만5천원으로서 총 세입예산액대비 전년도보다 2.4%가 감소한 50.7%가 되겠음

○2011회계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억7,244만5천원으로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2,781억원 대비 약 3.44%에 해당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96억3,651만8천원보다는 6,407만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2,218만원이 증가한 64억8,063만7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사업 중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에서 신규사업으로 경제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로 우리 구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제진흥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 마포구 4대 성장동력 거점개발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 내실있는 법무행정에서 각종 소송 건수 증가로 인하여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2천만원이 증가하여 1억500만원, 신규편성 고문변호사 자문료 1,32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및 활동비 600만원 증가한 1,8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2억4,943만4천원이 증가한 30억436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97만4천원이 감액된 1억4,852만9천원, 재무활동사업에서는 공기업경상전출금인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사업위탁비로 작년도보다 1,973만2천원이 증가한 19억4,461만8천원이 편성되었음.

○지역경제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억9,857만2천원이 감소한 13억7,587만6천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정책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서 마포웨딩타운축제 행사 지원비가 2,000천만원이 감소한 2,054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해 IT박람회 참가지원 등

1억4,370만원과 신규로 추가된 중소기업경영자금 상담요원 인건비 1,810만원, 신규사업으로는 중소기업지원의 날 운영비 1,290만원, 1인 창조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위탁운영비 등 1억7,560만원, 재무활동사업에서는 공기업경상전출금인 마포비즈니스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3,387만8천원이 증가한 9,239만2천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4억2,942만1천원이 증가한 121억9,873만1천원이 되겠으며 급여 및 제수당 등 인건비로 1억6,846만9천원이 증가한 45억6,238만2천원,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급량비, 포상금, 성과금 등 총 24개의 비용 경비 등으로 60억4,690만8천원, 관리비 등 영업외비용으로 10억2,601만2천이 편성되었음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구유재산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각 건물의 재산가액에서 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3,041만4천원이 증액된 1억4,676만9천원 등으로 총 3억3,546만5천원이 편성되었음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징수강화를 위한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서 공공운영비 등으로 154만원이 증가된 4억9,082만원을 포함하여 납세 홍보 및 세수 증대를 위한 우편료 등 운영비 4,940만원 감소 및 징수촉탁 포상금 등 1,674만1천원 증가로 전년도보다 3,211만7천원이 감액된 7억6,312만9천원이 편성되었음

○세무2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홍보활동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 등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및 포상금 등으로 전년도보다 1,570만7천원이 증액된 6억1,733만8천원이 편성되었음

[검토의견]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입재원의 감소와 조정교부금 등의 지원축소로 인하여 건전재정을 목표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일괄적으로 10%를 절감 조치함으로써 최대한 긴축예산편성에 노력하였으나 의존재원이 50.71%를 차지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의 이득과 직결되지 않는 전시효과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편성을 가급적 지양해야 하겠고 부서의 본래 시책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사업 및 행사마다 업무추진비를 과다 또는 중복 편성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서도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수요예측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자주재원 세입의 22.9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새로운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부당한 체납액 감소를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내에는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을 하고자하는 기획재정국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지역경제과의 마포디자인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서울시의 진흥계획 승인결정 지연에 따라 기반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사업비로 7,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 바 승인결정 지연사유와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물론 차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차질없는 사업시행이 요구됨.

1. 안 건 명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기획재정국)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2010년 11월 18일

4.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2010. 10. 16 법률 제10272호) 제127조
2. 지방재정법(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제36조

2011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구에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2011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254억1,480만7천원으로 수입재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5,745만4천원, 예수금 13억2,500만원, 예치금회수 232억3,235만3천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예수금원리금상환 8억5,745만4천원, 예치금 245억5,735만3천원이 되겠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3년도에 설치되었고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출연금, 용자상환금, 이자 등이 되겠으며, 2011회계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에서 수입액은 36억9,439만6천원으로 수입재원은 출연금 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이자포함 민간용자금회수 25억6,729만원, 만기 예치금회수 8억1,210만6천원이 되겠고, 지출계획에서 지출액은 민간용자금 35억원과 예치금 1억9,327만6천원, 고유목적 사업비 112만원이 되겠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전출금 3억원이 우리 구의 일반회계의 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밖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